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59
----------	-----

2023. 10. 16.
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9. 27. 강남구청장(생활체육과)
- 나. 상정의결
  -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(2023. 10. 16.)  
“수정가결”

## 2. 제안설명 요지(미래문화국장 : 문경수)

- 가. 제안이유
  - 저출산 국가위기 극복과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, 다자녀 가정의 체육 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
- 나. 주요내용
  -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체육시설 감면율을 50%에서 100%로 상향하고, 그 증명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및 세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폭넓게 하며, 막내자녀 나이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(안 제9조제3항제1호)
  -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체육시설 감면율을 30%에서 50%로 상향하고,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이 13세에서 18세로 확대됨에 따라 막내자녀 나이제한도 18세로 변경하고자 함 (안 제9조제3항제2호)

- 한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체육시설 감면율은 10%로 현행 유지하되, 막내자녀 나이제한만 13세에서 18세로 변경하고자 함 (안 제9조제3항제4호)

### 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기 타
  -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  - 입법예고(2023.8.25. ~ 2023.9.14.) 결과, 별도의견 없음
  -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 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 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본 조례안은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다자녀 가정 사용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안 제9조를 정비하려는 것임.
  - 안 제9조(사용료의 감면) 중 제3항제1호 100퍼센트 규정을 신설하고, 두 자녀 가정(막내 자녀 18세까지)은 50%, 한 자녀 가정(자녀 18세까지)은 10% 감면하려는 것임.
  - 여기서 신설 제3항제1호 중 “(유효기간 무관)” 의 의미가 다둥이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, 소지한 18세가 넘은 미혼의 성인 가족들까지 같은 가족 세대원이라는 증빙자료만 있으면 감면받게 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
  - 또한, 저출산 극복을 위한다고 하지만,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100% 사용료를 감면하면, 국가유공자나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(현행 조례 제9조제2항)) 50%보다 더 높은 감면비율을 제공하는 것인데, 사회적 형평성 논란은

없을 것인지 해당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임.
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- 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- 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
 2.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# 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
제260호

제안일자 : 2023.10.16.

제안자 : 행정재경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-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른 조례와의 통일성을 위해 감면 대상에 대한 조문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

### 2. 수정주요내용

- 체육시설 이용자 중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보완(안 제9조제3항)

1) ② 구청장은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감면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8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비율만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06, 2012.4.6, 2020.6.5, 2021.5.7.>

1. 50퍼센트<신설 2012.4.6, 개정 2019.6.28>

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<개정 2021.5.7.>

나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<개정 2021.5.7.>

다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<신설 2021.5.7.>

라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, 의사자 유족 <개정 2021.5.7.>

마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한 명(동일강좌 수강시)

바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(다만, 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)

사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,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(전용사용)

2. 10퍼센트 :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월 사용료 <개정 2021.5.7.>

가. <삭제 2021.5.7.>



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100퍼센트 :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(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)

제9조제3항제2호(중진의 제1호)가목 중 “행복카드를 소지한 세”를 “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한 두”로, “(다만, 막내자녀 기준 13세까지 적용한다)”를 “(막내자녀 나이 18세까지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호(중진의 제3호) 가목 중 “부모와 자녀(다만, 자녀 나이는 13세까지 적용한다)”를 “부모(자녀 나이 18세까지)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나. 한 자녀 가정의 자녀(6세부터 18세까지)

3. 30퍼센트 : 한 자녀 가정의 6세 미만의 영유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p>나. ~ 라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2. 30퍼센트</p> <p>가. <u>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(다만, 막내자녀 기준 13세까지 적용한다)</u></p> <p>나. <u>6세 미만의 영유아</u></p> <p>3. 10퍼센트</p> <p>가. <u>한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(다만, 자녀 나이는 13세까지 적용한다)</u></p> <p>나. (생략)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	<p>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30퍼센트 : <u>6세 미만의 영유아</u>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4. 10퍼센트</p> <p>가. <u>한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(자녀 나이 18세까지)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	<p>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30퍼센트 : <u>한 자녀 가정의 6세 미만의 영유아</u></p> <p>&lt;개정안과 같음&gt;</p> <p>4. &lt;개정안과 같음&gt;</p> <p>가. <u>한 자녀 가정의 부모(자녀 나이 18세까지)</u></p> <p>나. <u>한 자녀 가정의 자녀(6세부터 18세까지)</u></p> <p>다. (현행 나목과 같음)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--	--	--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사용료의 감면) ①·② (생 략)	제9조(사용료의 감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구청장은 구민이 사용료 감면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구민에게 제8조의 사용료를 다음 호의 비율만큼 감면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.
<신 설>	1. 100퍼센트 :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(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)
1. 50퍼센트	2. -----
가.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(다만, 막내자녀 기준 13세까지 적용한다)	가. ----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한 두 ----- (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)
나. ~ 라. (생 략)	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30퍼센트 : 한 자녀 가정의 6세 미만의 영유아
2. 30퍼센트	<삭 제>
가.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(다만, 막내자녀 기준 13세까지 적용한다)	
나. 6세 미만의 영유아	

3. 10퍼센트	4. -----
가. 한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 (다만, 자녀 나이는 13세까지 적용한다)	가. ----- 부모(자녀 나이 18세까지)
<신 설>	나. 한 자녀 가정의 자녀(6세부터 18세까지)
나. (생 략)	다. (현행 나목과 같음)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미첨부 사유

- (다)자녀 가정의 구립 체육시설 사용 시 그 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에 대한 개정이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### 2. 작성자

- 생활체육과 행정6급 김희수(02-3423-6362)